

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

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12. 3.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** 2010. 11. 17,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** 2010. 11. 18
- 다. 상정일자 :**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(2010. 12. 3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강창수 주택과장)

가. 제안이유

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하나로 공동체 활성화가 도입됨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지원 위주로 된 조례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정비가 필요함

나. 주요내용

- 1)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수·설치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제1항)
- 2) “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” 신설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)
- 3) 공동주택 일반 상담실 설치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제4항)

- 4)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규정함
(안 제7조제4항, 제8조·제4항 신설)
- 5) 공동주택 심의회 위원의 해촉 기준에 대해 규정함(안 제9조제5항)
- 6) 공동주택 지원금의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함(안 제10조제2항)
- 7)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등에 대한 차등지원 기준에 대해 규정함
(안 제10조제3항 별표 1)
- 8)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지원 시 공동체 활성화 등의 이행 여부실적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에 대해 규정함(안 제10조제3항 별표 1)

3. 검토보고의 요지 (이국환 전문위원)

- 동 개정 조례안은 「주택법」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하나로 공동체 활성화가 도입됨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·보수비 지원 위주로 된 조례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
- 주요내용을 보면,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및 공용시설물 보수·설치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정하고,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며,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, 공동주택 지원금의 우선 지원대상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차등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음.
- 동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및 분쟁을 해소하고 무관심과 배타주의로 붕괴되고 있는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함께하는 열린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됨.
- 본 개정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면, 안 제4조제1항 제2호 차목의

” 음식물 쓰레기 등 ” 을 삭제하고, 안 제4조제3항 ” 관리주체의 ” 를 ” 관리주체가 ” 로 하고, ” 서식에 의한 신청에 의거 실시하되 ” 를 ” 서식으로 신청하고 ” 로 하며, 안 제4조제4항 ” 상담자에 ” 를 ” 전문 상담자에 ” 로 하고, 안 제9조제3항 3호의 ” 5명 ” 을 ” 4명 ” 으로 하고, 안 제10조제1항 3호의 ” 시설유지관리는 ” 를 ” 시설물유지관리는 ” 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

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10. 12. 3

제 안 자 : 복지도시위원회

1. 수정이유

조례안 중 공동주택 지원대상 및 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 수정내용

- 가.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대상 중 중복을 피하고 명확히 하고자 “음식물 쓰레기 등”을 삭제함(안 제4조제1항 제2호 차목)
- 나. 자문단의 자문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“관리주체의”를 “관리주체가”로 하고 “서식에 의한 신청에 의거 실시하되”를 “서식으로 신청하고”로 함(안 제4조제3항)
- 다.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상담실을 운영하고 상담을 해주는 자에 대한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“상담자에”를 “전문상담자에”로 함(안 제4조제4항)
- 라.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명확히 하고자 분야별 전문가 “5명”을 “4명”으로 함(안 제9조제3항 제3호)
- 마. 위원회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“시설유지관리는”을 “시설물유지 관리는”으로 함(안 제10조제2항 제3호)

3. 수정조례안 : 별첨

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 제2호 차목의 "음식물 쓰레기 등"을 삭제하고,

안 제4조제3항 "관리주체의"를 "관리주체가"로 하고, "서식에 의한 신청에 의거 실시하되"를 "서식으로 신청하고"로 하며,

안 제4조제4항 "상담자에"를 "전문 상담자에"로 하고,

안 제9조제3항 제3호의 "5명"을 "4명"으로 하고,

안 제10조제1항 제3호의 "시설유지관리는"를 "시설물유지관리는"으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전부개정조례안	수정안
<p>제4조(지원대상)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/p> <p>1.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. 가. ~ 타.(생략) 2.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. 다만,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. 가. ~ 자.(생략) 차. <u>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, 택배시설의 설치·개선</u> 카.(생략) 타.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별지 제1호 <u>서식에 의한 신청에 의거 실시하되</u>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④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·운영 할 수 있으며, <u>상담자에</u>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지원대상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 가. ~ 타. (개정안과 같음) 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가. ~ 자. (개정안과 같음) 차. <u>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, 택배시설의 설치·개선</u></p> <p>카.(개정안과 같음) 타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----- 관리주체가 ----- ----- 서식으로 신청하고 ----- ----- .</p> <p>④ ----- ----- , 전문상담자에 -----.</p>
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주택, 건축, 복지,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 2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3명 이내 3. 법률·회계·공동주택관리·공동체·조경·건축·토목·전기·가스·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5명 이내(분야별 안배)</p>	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) ① ~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 2. (개정안과 같음) 3. ----- ----- 4명 -----</p>
<p>제10조(위원회의 심의사항 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·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 2. (생략) 3. <u>시설유지관리는</u>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</p>	<p>제10조(위원회의 심의사항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5. (개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 2. (개정안과 같음) 3. <u>시설물유지관리는</u> ----- -----</p>